

대전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114383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윤현진

피 고 1.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강철호, 김병구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는 원고에게 178,821,617원과 그중 178,047,338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와 피고 B 사이에 2018. 11.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31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원고는 2016. 6. 29.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6. 29.부터 2017. 6.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 한다)에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7. 6. 28.,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대출예정금액 2억 원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C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피고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은 그 후 2018. 6. 27.로 변경되고, 그 후 다시 2019. 6. 27.로 변경되었다.
- 3) 피고 회사가 2019. 3. 19. 위 대출 원금을 연체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이 신용정보로 등록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4. 11.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원금 1억 7,730만 원과 이자 1,457,988원 합계 178,757,9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4)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에 의한 지연지연손해율은 2016. 2. 1.부터 연 1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에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비용으로 774,124원이 발생하였다.

5)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즉시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2019. 4. 11.까지 위 손해금으로 155원(이하 '확정손해금'이라고 한다)이 발생되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

피고 회사는 2018. 11. 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3170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산 상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시가 1,117,196,21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702,485,000원 상당의 세종특별자치시 D 대 443㎡ 및 E 대 700㎡ 등 합계 1,819,681,21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C은행에 대한 1억 9,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F은행에 대한 합계 1,102,393,961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F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78,000,000원 + 그 외의 대출금 채무 424,393,961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G조합에 대한 3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피고 B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 합계 2,019,393,961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음성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78,821,617원(= 대위변제금 178,047,338원 + 대지급금 774,124원 + 확정손해금 155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78,047,33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8. 11. 20.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후 4개월가량이 경과된 2019.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주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채권자 H의 신청에 의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19카단256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그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거나,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후 5개월가량이 경과한 2019. 2. 20. C은행에 합계 193,104,808원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원고가 2019. 4. 11. C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2018. 4. 26. 피고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같은 해 5. 11. 피고 회사에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고 F은행의 후순위로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아 결국 피고 B가 등기비용을 부담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회사와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을나 제6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방법과 범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사해행위가 매매예약인 경우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균

별지

목 록

1. 충청북도 음성군 I 답 959㎡
2. 충청북도 음성군 J 답 2349㎡
3. 충청북도 음성군 I, J K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214.56㎡
4. 충청북도 음성군 I, J M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37.31㎡
5. 충청북도 음성군 I, J N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99.71㎡
6. 충청북도 음성군 I, J O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7. 충청북도 음성군 I, J P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8. 충청북도 음성군 I, J Q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9. 충청북도 음성군 I, J R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10. 충청북도 음성군 I, J S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11. 충청북도 음성군 I, J T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12. 충청북도 음성군 I, J U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13. 충청북도 음성군 I, J V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14. 충청북도 음성군 I, J W동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L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64.91㎡. 끝.